

2023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산등록 현황

□ 시행근거

-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

※ 재산등록 의무자 (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)
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, 4급 이상 공무원, 교육감, 법관·검사, 대령 이상 장교, 공기업의 장, 공직유관단체임원 등

□ 시행목적

- 재산 공개로 부정한 재산증식 등 부패 소지 원천 차단
- 고위공직자의 자율적 재산등록을 통한 청렴실천의지 표명

□ 등록 개요

- 등록 대상자 : 2명

(단위 : 명)

구분	대상	등록	미등록	등록율
2023년	2	2	0	100%

- 등록 재산내역 : 「공직자윤리법」에서 정한 15개 항목
* 부동산, 예금, 유가증권, 채권·채무 등
- 등록 기간 : (임명당시) ~ 당해 연도 말
* 연간 1회 정기등록, 변동 발생 시 수시등록

□ 행정사항

- 재산등록 전, 감사실의 적정성 등 검토
- 사전정보공표 재산등록 시행결과 게시(공표주기 : 정기변동)